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3
----------	------

발의연월일 : 2025. 2.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이연숙 의원

## 1. 제안이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인식 개선과 안전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불법 소각·처리를 최소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 달성군의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안전처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

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인원·연령·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산림기본법(법률)」(2023.10.31. 일부개정, 2024.5.1.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산림보호법(법률)」(2024.2.13. 타법개정, 2024.5.17. 시행)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법률)」(2022.12.27. 일부개정, 2024.12.2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 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2022.12.31. 전부개정, 2025.1.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

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27. 일부개정, 2025.2.1. 시행)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이 먼저 필요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4조제1호)
- 파쇄 장비 임차 수요\*가 현 수준에서도 관리 가능하여 장비 구입이 시급하지 않으며, 장비 임대 지원·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지원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4조제2호부터 제4호)

**\* 영농부산물 파쇄기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23~'24)**

(단위 : 건)

기종	보유 수(대)	2023년	2024년
덩굴파쇄기(줄기)	4(농업기술센터 3, 하빈 1)	98	96
잔가지파쇄기 (잔가지, 뿌리 등)	7(농업기술센터 2, 현풍 2, 하빈 3)	166	161
목재파쇄기	1(농업기술센터 1)	3	5
<b>계</b>		<b>267</b>	<b>262</b>
<b>연평균 실적</b>			<b>265</b>

주 : 1회 임차 시 인근 농가도 함께 활용 후 반납하여 2~3가구 이상 처리 가능

(자료:농촌지도과)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 (연락처)

박주용 (☎ 2292)